

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9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민·기업이 함께 시정에 참여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.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임기가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되어 있어 기후환경본부 특성에 따른 계속사업의 추진 및 위원 위촉시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연임횟수를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의 연임횟수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2) 입법예고('20. 7. 30.~8. 19.)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본문 중 “한 차례”를 “두 차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) ① (생 략)</p> <p>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<u>한 차례</u>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 <u>두 차례</u>-----.</p> <p>----- -----.</p>

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.

4. 작성자

환경정책과 이승한 (02-2133-3529)